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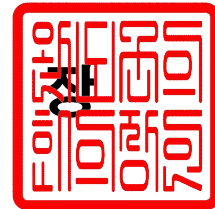
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 27호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2. 발 의 자: 지 민 의원

3. 제정이유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업무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5.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

6. 조례안예고기간: 2026. 8. 18. ~ 2026. 8. 22.(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8,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상해·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범죄 발생 당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찰서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3.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피해자의 의료비·구조금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5.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